중랑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 및 탈퇴 규정

제정 2021.06.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랑구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이라 함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라 함은 본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단체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로 중랑구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지부단체에 중랑구를 대표하여 본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

④ 장애인생활체육클럽이라 함은 장애인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종목별 · 장애유형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본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가입신청 서류) ①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단체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단체연혁
3. 임원 명단 (취임승락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 규정(규약)
5. 종목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선수 또는 동호인(클럽) 등록현황
7. 사업실적(결산) 및 사업계획서(예산)
8. 가맹신청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9. 상급단체의 가맹된 중앙가맹단체의 시·도 지부 인증서

제4조 (가맹요건) ① 본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랑구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2. 중랑구를 통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뱅된 단체의 구지부인 단체일 것
4.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인종목이거나 국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클럽)을 보유하여야 하며, 생활체육동호회는 8명 이상의 회원으로 관내 거주 및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한다.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가맹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회 규약 및 가맹단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관(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5조 (심의절차)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 제8조(가맹) 및 제9조(탈퇴)에 따른다.

제6조 (결격단체의 지정) ① 본회 가맹단체의 가입요건은 매년 심의하여 해당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맹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8조에 의거 제명한다.
② 결격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③ 결격단체로의 지정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7조 (제한사항) 본회 가맹단체라 할지라도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회의 예산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탈퇴하게 한다.
1. 가맹단체가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단체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맹단체인 경우
② 본회 가맹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가맹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탈퇴신청) 본회 가맹단체가 본회 규약 제9조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의 회의록(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회의록)

부 칙 [2021.06.0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랑구장애인체육회 동호인 가입 신청서

단 체	단 체 명			홈페이지(카페)		
				정보센터 클럽명		
	단체주소				우편번호	
	전 화				F a x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H.P		E-mail	
담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H.P		E-mail	
단체설립연월일						

운영종목		총인원 명
참여인원구분 (장애유형)	지체(명), 시각(명), 청각(명), 발달(명), 뇌병변(명), 기타장애(명), 비장애(명)	

본 단체(동호회)는 중랑구장애인체육회 동호인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중랑구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중랑구 장애인생활체육 단체(동호회) 운영 동의서

구 분	내 용
정 의	○ “생활체육클럽”이라 함은 장애인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중랑구장애인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목 적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유도, 생활체육발전, 비활성화 종목육성 등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명 칭	○ (단체명 :)을 사용한다.
책 임 및 의 무	○ 생활체육클럽 운영에 대한 업무협조 ○ 생활체육클럽 운영 및 관리 ○ 생활체육클럽 운영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 본회 생활체육관련 행사 및 대회 참여 협조 ○ 지역생활체육발전 및 활성화 도모 ○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유도
지 원 보 류 · 중 단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 보류 또는 중단됩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평가단으로부터 운영 지적을 받은 단체 - 운영진 부재 및 임원간의 내분이 있는 단체 - 운영진 지도력 결여로 인한 회원 간의 불화 단체 - 본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성실한 단체 ※ 기타 본회에서 판단하기에 생활체육 클럽 운영에 부적절한 단체는 1회 경고 후 지원 제한 · 보류 · 중단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단 체 소 개 서

<table>
<tr><td>단체명</td><td colspan="10">◯</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10">◯ 생활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
◯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성 함양추진
◯ 생활 체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인식전환에기여</td></tr>
<tr><td>단체연혁</td><td colspan="10"></td></tr>
<tr><td rowspan="5">인력현황</td><td rowspan="4">장애유형</td><td colspan="2">계</td><td>지체</td><td>발달</td><td>시각</td><td>청각</td><td>뇌병변</td><td>기타장애</td><td>비장애</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명)</td><td colspan="10">◯심한장애[1급~3급(중증)] 명
◯심하지 않은 장애[4급~6급(경증)] 명 비장애인(명)</td></tr>
<tr><td>여(명)</td><td colspan="10">◯심한장애[1급~3급(중증)] 명
◯심하지 않은 장애[4급~6급(경증)] 명 비장애인(명)</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10">◯회장(명)총무(명)외, 회원 명으로 구성됨</td></tr>
</table>

* 현장사진: 클럽 운영 장소 및 회원사무실 등

중랑구 장애인생활체육 단체(동호회) 회원명단

단체명(　　)클럽 / (　　)종목

1. 운영진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핸드폰	이메일

2. 회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비장애인 참가자가 있을 경우 별도 표기 할 것-비장애인(활동보조인)

『　　클럽』

동 호 인 가 입 동 의 서

장애구분	ㅁ 장애 ㅁ 비장애		회원구분	ㅁ 정회원 ㅁ 준회원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 명			생년월일		
E-mail					
주 소	자 택				
전 화	자 택		휴대폰		

위와 같이『　　』클럽
동호인 가입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원 명 :　　(인)

(복지카드 첨부)